

● 제321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청년 장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 1321)

2023. 12. 19.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춘곤 의원 발의】

의안번호 1321

I. 조례안 개요

1. 제안경위

가. 제안자 : 김춘곤 의원 (36명 찬성)

나. 제안일자 : 2023년 10월 13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3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출이유

- 2023년 6월 5일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어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조문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체계 정합성과 완결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개정함. (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1 개정안의 취지

- 동 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의 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체계 적합성을 높이고자 발의되었음.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가. 서울특별시 청년장해 제대군인 관련 사업 현황

- ‘22년 9월 기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가운데 서울시의 2~30대는 1,890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기준 : ’22.9월 국가보훈부 통계)

구 분	총 계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합 계	222,576	33,718	150,405	22,345	66,694	10,411	5,477	962
20대	1,550	298	28	4	504	90	1,018	204
30대	8,323	1,592	306	53	6,720	1,286	1,297	253
40대	15,908	2,486	3,383	560	11,636	1,772	889	154
50대	21,224	3,096	9,226	1,333	11,256	1,656	742	107
60대 이상	175,571	26,246	137,462	20,395	36,578	5,607	1,531	244

- ‘21년 서울시에 국가유공자 요건심사에 접수된 20~30대 청년은 361명이며, 이 가운데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청년은 232명(64%)임.

- 그러나 기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제대군인법」에 따라 5년 이상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청년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미비했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청년층의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22년 10월 본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청년 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사업은 최초 ‘22년 상이군경회의 보조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해당 조례 제정 등을 통해 ‘23년부터 복지재단을 통해 대행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시설 현황

<p>○ 시설현황 : 청년 부상 제대군인 지원센터 1개소(개소일자 : '22.3.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서울시청 시민청 B1 청년활력소 內 - 운영인력 : 총 4명 (운영실장 1, 지원사업담당 3) <p style="text-align: center;">※ 복지재단 공익법센터장이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장 겸임 중</p> <p>○ 주요사업 : 법률상담, 심리재활지원, 창업취업 연계, 유공자 신청 지원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상제대군인 지원 원스톱 상담창구 운영(사고처리, 유공자 등록절차, 심리·법률상담 접수) - 국가유공자 신청에서 상이등급 조정까지 법률상담 연계(복지재단 공익법센터 전담 변호사의 전문상담 및 법률지원) - 예방적 심리상담부터 심리위험 청년까지 체계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 <p>○ 대행기간 : ‘23.1.1 ~ ’ 25. 12. 31. (3년)</p>
--

<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예산 지원 현황

연도	2023년	2024년(안)
예산 총액	509,600천원	470,418천원
구분	· 인건비 : 255,600천원 · 운영비 : 27,000천원 · 사업비 : 227,000천원	· 인건비 : 198,418천원 · 운영비 : 17,000천원 · 사업비 : 255,000천원

- ‘23년 11월 말 기준 센터에서는 총 352건의 종합상담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세 실적은 다음과 같음.

<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법률·심리·취업 지원 실적

해당연도	2022년 추진실적	2023년(계획)	2023년 11월 말 추진실적	
종합상담	267건	-	352건	
법률 지원	국가유공자 등록 지원	12건	-	2건
	의료자문	6건	-	6건
	소송대리	1건	-	3건
심리 지원	개인심리상담	127회	500회	157회
	자조모임	20회(94명)	20회	20회(140명)
취업지원	114건 (단순 정보 연계)	20회 (취업특강)	20회(100명) * 취업 : 5건(3명)	

-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는 2022년 3월 25일 개소되어 약 2년간 운영되며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센터가 곧 운영 3년차에 들어가는 만큼 센터의 장기적·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재 운영방식의 점검(대행방식) 등을 포함한 중·장기운영 계획 등의 수립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판단됨.

나.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검토사항

- 본 개정안은 23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된 것을 반영하여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기존 조례를 어문 규정에 맞추어 정비해 조례의 체계정합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별도의 쟁점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4. “전상 청년유공자”라 <u>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u>에 따라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u>국가보훈처장</u>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중 청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4. ----- <u>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u>----- ----- ----- ----- ----- <u>국가보훈부장관</u>----- ----- ----- -----</p>
<p>5. “공상 청년유공자”라 <u>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u>에 따라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p>	<p>5. ----- <u>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u>----- ----- -----</p>

현행	개정안
<p>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u>국가보훈처장</u>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중 청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 ----- ----- ----- <u>국가보훈부 장관</u> ----- ----- -----.</p>

3 종합의견

- 서울시는 그 동안 보훈 사각지대라 할 수 있었던 20~30대 청년을 대상으로 장애 제대군인 지원을 강화해오고 있음.
- 본 개정안은 23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된 것을 반영하여 기존 조례를 어문 규정에 맞추어 정비해 조례의 체계정합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별도의 쟁점사항은 없음